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63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 : 2020. 12. 18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시장이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경우 중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10조제2항 중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기구'는 제외하도록 수정함.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2항 본문 중 ‘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’을 ‘와 공동으로’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)</p> <p>① ~ ③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9조(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)</p> <p>① ~ 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시장은 주거관련 사 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 급할 토지의 확보를 위 해 서울주택도시공사(이 하 “공사”라 한다)에 출 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며 대부료는 제3 항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9조(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)</p> <p>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0조(시장 등의 공동사 업 추진) 시장 등은 주 택임대 및 주택관리 사 업 등 주택사업에 대하 여 자본금 및 현물의 출 자, 인력 등의 지원을 통 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 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시장 등의 공동사 업 추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제10조(시장 등의 공동사 업 추진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② 시장 등은 「부동산 투자회사법」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② 시장 등은 「부동산 투자회사법」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토지의 확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에 출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며 대부료는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 등은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)</p> <p>① ~ ③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9조(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)</p> <p>① ~ 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토지의 확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에 출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며 대부료는 제3항을 준용한다.</u></p>
<p>제10조(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) 시장 등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 사업 등 주택사업에 대하여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,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10조(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시장 등은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